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3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3. 22. 신종갑 의원 외 8명
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3. 3. 3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김승수 의원

가. 제안이유

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인권보호의 책무(안 제3조)
- 2)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3)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4)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(장홍용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임.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3조에서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인권보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
 - 안 제6조 에서는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 -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임.
- 저장강박 의심가구들은 벌레, 오물, 폐기물 등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본인의 건강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쾌함이 전달되고 화재 등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. 이는 이웃과의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아 공동체 생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이런 측면에서,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.
- 또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추후 저장강박 의심가구(2022년 실태조사 : 16개 가구) 기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저장행동에 대한 심리지원, 주거환경개선, 방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사회보장기본법

[시행 2021. 12. 9.] [법률 제18215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1. 28.] [법률 제18336호, 2021. 7. 27., 타법개정]

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 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 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-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